

제290회 임시회
2010. 6. 18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문화위원회

심사보고서

2010. 6. 18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5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일

상정일자 :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10. 6. 8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이 장 근)

제안 이유

○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 왔으나,

○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“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”과 “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”에 맞추어 이 조례 폐지

□ 주요 내용

- 「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길 기 응)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 12월 8일 단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,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고
-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
-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
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의결

7. 소수이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5월 27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해 왔으나,
-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“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”과 “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”에 맞추어 이 조례 폐지

2. 주요내용 : 조례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하수법 시행령

제40조(지하수관리위원회) ① 삭제 <2009.4.30>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11.30>

1.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·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③ 생략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개정 2010.2.26. 법률 제10046호)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부칙 <제8069호, 2006.12.20.>

제2조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 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)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,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에 따라 시·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·의결하는 상임 위원회로 본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입법예고 2010.3.12.)

제13조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지역교육청(소속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 학교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

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29>

1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- ②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해서는 제10조,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